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6일 박수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민의원)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의 요지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음.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더하여 해외 건설업에 한정된 출자전환 손금산입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조세특례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기존의 과세특례를 지나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세제지원이 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추후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